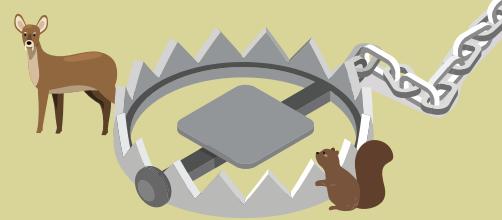




제작·판매·소지·보관 등 원칙적 금지 안내



야생동물 포획도구, 함부로 판매·보관하지 마세요!

01 어떤 포획도구가 금지되나요?

「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따라
다음 도구들의 제작·판매(온라인 판매 포함)·소지
또는 보관이 모두 금지됩니다.



① 땡



② 올무



③ 창애

※ 예외적으로 제작·판매·소지 등이 허용되는 경우(학술연구, 관람·전시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경우)



재산 피해 예방용

쥐, 두더지를 잡는 용도의
소형 땡, 창애



유해야생동물 포획용

관련 규정에 따라 정해진
포획틀, 포획장, GPS 부착 포획트랩 등

02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?

불법으로 포획도구를 제작·판매·소지 또는 보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
강력한 처벌을 받습니다.

03 야생동물 포획도구 판매·보관을 목격했다면?

야생동물의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 포획도구 판매·보관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주세요.



- ① 기후에너지환경부
- ② 유역(지방)환경청(자연환경과)
- ③ 관할 지방자치단체(환경부서)
- ④ 경찰서(112)
- ⑤ 야생생물관리협회(02-911-0000)

